

의안번호	2204054
의 퇴 인	인요한의원
회 답 일	2024.10.18.
추계번호	24E3857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.0조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4.5조원(연평균 △1.1조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보험료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조정 (안 제59조의4①)	-	-10,253.4	-10,887.2	-11,560.1	-12,274.6	-44,975.3	-11,243.8

※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규모별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59조의4제1항 (특별세액공제)	○ 보험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- (현행)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보험료(연 100만원 한도)에 대하여 세액공제(12%/15%)* 적용 *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%, - (개정안) 로소득자가 지급한 보험료(연 200만원 한도)에 대하여 세액공제(12%/15%)* 적용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9조의4제1항 (특별세액공제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며, 부칙에 의해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
 - 개정안의 부칙에서 동 법 시행 이후 보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됨을 규정함에 따라,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
 - 2025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징수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가 차년도에 이루어짐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- 보장성 보험료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재정패널조사자료 및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추계
 - 국세통계연보의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(납입액)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포함되지 않아, 동 자료로는 공제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불가
 - 국세통계연보의 보험료 납입액에는 납입한도액인 100만원을 초과시, 100만원으로 집계되기 때문임
 - 따라서 제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(2021년 귀속)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-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최근 5년 평균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
 - 2018~2022년 동안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증가율은 6.2%
- 보험료 세액공제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세액공제 신청 현황

- (제도 개요) 보장정보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장정보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일정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
 -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하는 보장정보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금액(연 100만원 한도)의 12%를 산출세액에서 공제
 -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정보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금액(연 100만원 한도)의 15%를 산출세액에서 공제
- (세액공제 실적) 2022년 보험료세액공제 규모는 약 1.3조원으로 2018~2022년간 연평균 5.4% 증가
 - 2022년 보장정보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공제세액 규모는 1.1조원으로 2018~2022년간 연평균 6.2% 증가

[표 2] 전체 근로소득자의 보장정보보험료 세액공제 규모 추이

(단위: 만명,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연평균
적용인원	982	1,054	1,095	1,149	1,201	1,096
(증가율)	6.5%	7.4%	3.8%	5.0%	4.5%	5.2%
공제금액	10,681	11,484	11,918	12,588	13,158	11,966
(증가율)	5.4%	7.5%	3.8%	5.6%	4.5%	5.4%

주: 전체 세액공제 신청자 기준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3]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보장정보보험료 세액공제 규모 추이

(단위: 만명,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연평균
적용인원	772	835	864	925	981	876
(증가율)	7.1%	8.2%	3.5%	7.1%	6.1%	6.2%
공제금액	8,770	9,480	9,874	10,559	11,148	9,966
(증가율)	6.9%	8.1%	4.2%	6.9%	5.6%	6.2%

주: 결정세액있는 자 기준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추계 방법

- (요약)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 금액 증가율은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 분석을 통해 추계하였으며, 이를 기반으로 국세통계연보의 총급여액 규모별 1인당 세액공제 금액 및 인원수를 활용하여 추계
 - 재정패널조사는 2022년 조사자료(제15차)가 가장 최근 공표된 자료로 이를 활용하였으며, 2022년 조사자료는 2021년 가계의 소득과 지출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
- (개정안에 따른 1인당 평균 세액공제금액 변화율 추정)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로는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함에 따라, 재정패널조사의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을 기초로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1인당 평균세액공제 금액을 추정하여 변화율을 도출
 - 국세통계연보의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(납입액)은 보험료 납입액이 납입한도액인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, 납입한도인 100만원으로 공제금액에 집계함에 따라, 동 자료로는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곤란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1인당 평균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 추정, 재정패널조사 활용
(단위: 만원)

총급여액 규모	1인당 평균 보험료 세액공제금액		
	현행 (A)	개정안 (B)	변화율 (C)
전체	11.4	19.7	72.7%
1천만 이하	11.0	17.9	62.6%
1.5천만 이하	11.2	19.2	71.7%
2천만 이하	11.4	19.2	69.3%
3천만 이하	11.4	19.2	68.5%
4천만 이하	11.4	19.9	74.1%
5천만 이하	11.6	20.5	77.8%
6천만 이하	11.7	20.6	76.0%
8천만 이하	11.5	20.9	81.3%
1억 이하	11.6	20.6	78.1%
2억 이하	11.6	21.2	82.1%
3억 이하	12.0	23.8	98.4%
5억 이하	12.0	18.0	50.0%
10억 이하	12.0	24.0	100.0%
10억 초과	-	-	-

주: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기초로 현행 제도 및 개정안에 따른 1인당 평균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을 추정
자료: 「재정패널조사」 15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1인당 세수효과) 개정안에 따른 1인당 평균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금액은 2022년 기준 국세통계연보의 1인당 평균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금액¹⁾을 기초로 하되,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현행 대비 개정안 적용시의 1인당 세액공제금액 증가율을 반영해 추정
 - 1인당 평균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금액 차이와 1인당 결정세액을 비교하여, 동 차이가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클 경우 1인당 결정세액만큼 1인당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(추계 대상 인원) 국세통계연보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자 중 결정세액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 - 2022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약 2,053만명 중 1,200만명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며, 이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는 981만명임
- (총 세수효과) 위에서 도출한 1인당 평균 세수효과에 2022년 기준 국세통계연보의 보장성보험료 공제인원을 곱하여 총 세수효과 추계하였으며, 그 결과 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에 따라 2022년 기준 8,565억원 세수감소 예상
 -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8~2022년 동안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증가율은 6.2%를 따를 것으로 가정

1) 결정세액 있는 자의 인원수 기준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: 근로소득세, 2022년(귀속연도) 기준

총급여액 규모	공제 인원 ¹⁾ (A) 명	1인당 평균 세액공제금액 (만원)				1인당 결정세액 ⁴⁾ (F) 만원	1인당 세수효과 (G= min(E,F)) 만원	총 세수효과 ⁴⁾ (F=A×E) 억원
		현행 ²⁾ (B)	개정안 (C=B×(1 +D))	변화율 ³⁾ (D)	공제금액 차이 (E=C-B)			
전체	9,813,785	11.4	19.6	72.7%	8.3	—	—	8,565.1
1천만 이하	0			62.6%				
1.5천만 이하	2,276	11.8	20.2	71.7%	8.4	1.1	1.1	0.3
2천만 이하	83,115	11.6	19.6	69.3%	8.0	6.5	6.5	53.7
3천만 이하	1,278,041	11.4	19.2	68.5%	7.8	19.9	7.8	996.0
4천만 이하	1,663,124	10.9	18.9	74.1%	8.0	60.1	8.0	1,338.3
5천만 이하	1,566,676	11.1	19.8	77.8%	8.6	129.9	8.6	1,353.9
6천만 이하	1,271,619	11.4	20.1	76.0%	8.7	220.0	8.7	1,102.0
8천만 이하	1,694,882	11.6	21.0	81.3%	9.4	382.3	9.4	1,596.1
1억 이하	1,009,923	11.7	20.8	78.1%	9.1	723.2	9.1	920.3
2억 이하	1,093,276	11.7	21.3	82.1%	9.6	1,744.3	9.6	1,052.0
3억 이하	98,014	11.6	23.1	98.4%	11.5	5,315.0	11.5	112.3
5억 이하	36,355	11.6	17.4	50.0%	5.8	10,225.1	5.8	21.1
10억 이하	12,712	11.6	23.1	100.0%	11.6	21,329.7	11.6	14.7
10억 초과	3,772	11.5	23.0	100.0%	11.5	80,490.3	11.5	4.3

주: 1) 국세통계연보 보험료세액공제 신청인원 중 결정세액 있는 자의 인원수

2) 국세통계연보 보험료세액공제 신청인원 중 결정세액 있는 자의 1인당 평균 세액공제 금액

3) 변화율은 앞의 [표 4]의 변화율을 준용하되, 재정패널조사에 총급여 10억원 초과자가 없음에 따라 이는 바로 앞의 구간인 5억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변화율을 적용

4) 2022년 귀속 국세통계연보 기준 1인당 결정세액(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)

자료: 「재정패널조사」 15차년도 자료 및 「2022 국세통계연보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4. 세수효과 요약

- (귀속기준)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를 확대할 경우, 소득세수는 2025년 1.0조원, 2029년 1.3조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5.8조원(연평균 1.2조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(소득 발생연도 기준, 귀속 기준)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보험료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조정 (안 제59조의4①)	-10,253.4	-10,887.2	-11,560.1	-12,274.6	-13,033.2	-58,008.5	-11,601.7

- (징수기준)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를 확대할 경우, 소득세수는 2026년 1.0조원, 2029년 1.3조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4.5조원(연평균 1.1조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- 징수 기준으로 조정시, 근로소득세는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세수가 2026년 전액 납부되는 것으로 전제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(징수 기준)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보험료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조정 (안 제59조의4①)	-	-10,253.4	-10,887.2	-11,560.1	-12,274.6	-44,975.3	-11,243.8

※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규모별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강민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민지	02-6788-4746	min1231@assembly.go.kr